

# 국적법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 10275 호, 2010. 5. 4, 일부개정]

**연혁** □ 제 1 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2 조(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(國籍)을 취득한다.

1. 출생 당시에 부(父)또는 모(母)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
2.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
3.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

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(棄兒)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3 조(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(이하 "외국인"이라 한다)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(認知)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1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일 것
  2.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
- 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  
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4 조(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-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 5 조부터 제 7 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.  
③ 제 1 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  
④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5 조(일반귀화 요건)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 6 조나 제 7 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
2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성년일 것
3. 품행이 단정할 것

4. 자신의 자산(資産)이나 기능(技能)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

5.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(素養)을 갖추고 있을 것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6 조(간이귀화 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 5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
  2.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
  3.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(養子)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성년이었던 자
-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5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
2.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
3. 제 1 호나 제 2 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,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 1 호나 제 2 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(相當)하다고 인정하는 자
4. 제 1 호나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(子)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 1 호나 제 2 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7 조(특별귀화 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 5 조제 1 호·제 2 호 또는 제 4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. 다만,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.

2.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
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7 조(특별귀화 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 5 조제 1 호·제 2 호 또는 제 4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1.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. 다만,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.

2.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
3. 과학·경제·문화·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

②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5.4>

[전문개정 2008.3.14]

[시행일 : 2011.1.1]

**연혁** □ 제 8 조(수반 취득) ① 외국인의 자(子)로서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인 자는 부모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모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9 조(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(國籍回復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나 사회에 위해(危害)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

2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
3.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

4.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제 1 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
④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(隨伴) 취득에 관하여는 제 8 조를 준용(準用)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10 조(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(喪失)한다. 다만,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0 조(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

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5.4>

1.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 6 조제 2 항제 1 호· 제 2 호 또는 제 7 조제 1 항제 2 호· 제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

2. 제 9 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3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 9 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

4.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 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 9 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

5.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 1 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(喪失)한다. <개정 2010.5.4>

[전문개정 2008.3.14]

[시행일 : 2011.1.1]

**연혁** □ 제 11 조(국적의 재취득) ①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1 조(국적의 재취득) ① 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②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[시행일 : 2011.1.1]

제 11 조의 2(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)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[이하 "복수국적자"(복수국적자)라 한다]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.

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**연혁** □ 제 12 조(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) ① 만 20 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,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 년 내에 제 13 조와 제 14 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5.4>

② 제 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병역법」 제 8 조에 따라 제 1 국민역(제일국민역)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 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③ 직계존속(直系尊屬)이 외국에서 영주(永住)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 14 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1. 현역·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
2. 제 2 국민역에 편입된 경우
3.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

[전문개정 2008.3.14]

[제목개정 2010.5.4]

**연혁** □ 제 13 조(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)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 12 조제 1 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② 복수국적자로서 제 12 조제 1 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제 12 조제 3 항제 1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 년 이내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0.5.4>

③ 제 1 항 및 제 2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0.5.4>

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(受理) 요건, 신고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5.4>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14 조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)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 12 조제 1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제 12 조제 1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14 조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)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제 12 조제 2 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4>

② 제 1 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 <개정 2010.5.4>

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,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5.4>

[전문개정 2008.3.14]

[제목개정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제 14 조의 2(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)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 1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 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 10 조제 2 항, 제 13 조제 1 항 또는 같은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 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 2 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제 14 조의 3(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)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.



1. 국가안보,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2.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[본조신설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제 14 조의 4(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)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**연혁** □ 제 15 조(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)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 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(遡及)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1.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2.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3.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4.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(子)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
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④ 제 2 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□ 제 16 조(국적상실자의 처리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(제 14 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)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 제 17 조(관보 고시)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(告示)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 제 18 조(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.

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(讓渡)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 제 19 조(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)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 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**연혁**  제 20 조(국적 판정)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제 21 조(허가 등의 취소)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8.3.14]

제 22 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5.4]

[시행일 : 2011.1.1]

**+**  부칙 <제 5431 호, 1997.12.13>

제 1 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·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) ①제 9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



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

②제 11 조의 개정규정은 제 1 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 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

제 4 조 (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) 제 10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

제 5 조 (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제 12 조 내지 제 14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(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 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 12 조제 1 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.

제 6 조 (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) 제 16 조 및 제 18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

제 7 조 (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) ①1978 년 6 월 14일부터 1998 년 6 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4 년 12 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2.19>

1.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

2.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 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. <개정 2001.12.19>

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 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④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.

제 8 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81 조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.

☐☐ 부칙 <제 6523 호, 2001.12.1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☐ 부칙 <제 7075 호, 2004.1.20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 6 조제 2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개정규정은 1998 년 6 월 14 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.

☐☐ 부칙 <제 7499 호, 2005.5.24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 12 조제 1 항 단서·제 3 항 및 제 14 조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⊕ □ 부칙 <제 8435 호, 2007.5.17> 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

제 1 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 2 조 부터 제 7 조 까지 생략

제 8 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6 조제 3 항 중 "호적관서"를 "가족관계등록관서"라 한다.

⑥부터 <39>까지 생략

제 9 조 생략

□ □ 부칙 <제 8892 호, 2008.3.14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1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⊕ □ 부칙 <제 10275 호, 2010.5.4>

제 1 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2 조제 1 항 본문, 같은 조제 2 항 및 제 13 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 2 조(제 3 항 중 제 14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부칙 제 4 조제 1 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) ① 종전의 제 12 조제 2 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 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,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남자는 제 12 조제 3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.

② 종전의 제 13 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 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 15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 13 조제 3 항 및 제 14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 조(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) 제 10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10 조제 2 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 4 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4 조제 2 항제 6 호 중 "이중국적자"를 "복수국적자(複數國籍者)"로 한다.

제 98 조제 1 항제 1 호 중 "「국적법」 제 13 조제 1 항"을 "「국적법」 제 13 조"로, "이중국적자"를 "복수국적자"로 한다.

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제 2 항제 1 호 중 "이중국적자(二重國籍者)"를 "복수국적자(複數國籍者)"로 한다.

